

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[별지 제17호서식] <개정 2025. 7. 31.> 세움터(www.eais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건축물지번 []변경 []정정 신청서

• 어두운 난(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	접수일시			발급일			처리기간			즉시		
소유자	성명 또는 명칭						주민(법인)등록번호							
	주소						전화번호							
(변경·정정) 전						(변경·정정) 후						변동구분		
대지위치			지번		비고	대지위치			지번		비고	변동일		
												변동원인		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지번 []변경 []정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변경신청의 경우 가. 현황측량성과도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,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 나.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(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정정신청의 경우: 현황측량성과도(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하고,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,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	